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자문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1 상품 개요

자문상품명	인모스트 연금1호(펀드)
투자자문전략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분석을 통한 효율적 분산투자를 전략으로 중·장기 포토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일부 자산은 미래가치산업을 발굴,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함.
자문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 0 ~ 100% RP 및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 0 ~ 100%
가입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단위 (권장)
수수료	투자자문 수수료 연 1.0% (부가세 포함) ※별도 성과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등급	1등급(초고위험), 총 5단계 중 1번째 높음

2 투자자문 담당자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주요 자격사항
장 재 창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PB학 석사 前 신영증권(주) 대치지점장 前 IFA파트너스(주) 대표이사 現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펀드투자자문인력 증권투자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자문인력

3 계약 및 수수료 지급 세부내용

계약기간	1년단위 (권장) ※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 종료일을 고지하고,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
계약금액	자문결합계좌에 입금된 금원 (최소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입금 후 서비스 제공)
중도출금	계약기간 중 자문결합계좌에서의 중도출금 제한없음
수수료의 계산	투자자문재산 평균평가금액(평잔)의 연 1.0% (부가세 포함) ※ 증액 수수료도 동일한 방식
수수료의 지급	매 월단위 후취 (연 12회)
중도해지/환불	※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후취방식으로 환불 수수료 미발생

4 회사 개요

회사명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장 재 창, 최 근 민
금융투자업 등록일	2017년 11월 21일		자본금		2.6억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8층(신사동, ICTTower)				
전화번호	02-2068-6482	팩스	02-2068-6481	E-mail	advisory1@inmostadvisor.com
주요주주(지분율)	장재창(40.4%, 대표이사), 최근민(25%, 대표이사), 인모스트인베스트(25%)				
독립투자자문 여부	비 독립투자자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수취 여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자문상품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일부 수수료 수취
계열금융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휴 금융기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포스증권, 키움증권

5 투자 위험

위험종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 손실 위험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문 성과위험	투자자문 내역의 성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금융투자상품 선택이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위험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편입된 자산이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통화 환율변동에 의해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회비용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장위험 등에 따라 거래가 중지될 수 있으며, 추후 거래 재게 시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위험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중도상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경영지원팀(☏ 02-2068-6482) 또는 당사 메일(advisory1@inmostadvisor.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금융투자협회(2003-9423)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등 세부 계약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INMOST
ADVISOR

투자자문계약권유문서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자문계약권유문서입니다.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고객님께 제공하는 서면자료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자문의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고객님께 귀속되므로 투자자문계약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핵심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자문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인모스트투자자문

INMOST
ADVISOR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투자자문의 내용

글로벌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상품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맞는 최적의 자산배분 및 금융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투자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

① 집합투자증권
② 파생결합증권
③ 환매조건부 매매(RP)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⑤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3)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

① 투자자문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자문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④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에 대한 사항
⑤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4) 투자자문의 방법 및 시기

회사는 투자자문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분기 1회이상 구술, 문서, 유문선통신, 자문플랫폼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고객이 투자자문의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가 제공합니다.

5)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 절차 및 지침

1) 투자자문업무 절차

1. 계약체결 전 : 회사소개, 투자자문계획, 계약권유문서 등의 설명 및 서류 교부
2. 투자성향진단 :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기초로 투자성향 진단·분석
3. 투자자문계약 : 투자자문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4. 투자자문업무수행 :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제공 등 투자자문수행, 리스크관리
5. 투자자문결과평가 : 투자자문 성과평가, 고객 의견청취 및 반영

2) 투자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기본 지침

① 신의성실한 투자자문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수
②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문수행
③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④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추구
⑤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3. 투자자문담당자에 관한 사항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장 재 창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PB학 석사 前 신영증권 대치지점장 前 (주)IFA파트너스 대표이사 現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펀드투자자문인력 증권투자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자문인력

*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고객과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1) 투자자문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고객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3) 회사가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관한 자문을 고객에게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위 사항을 갑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문의사를 결정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합니다.

5.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투자자문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고객은 투자자문자산의 자문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투자자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③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INMOST ADVISOR

6. 고객의 의무 및 책임

1) 통지의무
고객은 자문계약 관련 각종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없이 투자자문내용을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투자자문자산의 자문 결과에 대한 책임
투자자문 대상상품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자문서비스에 따른 정당한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7. 수수료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써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2) 투자자문계약의 자문수수료는 다음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는 투자자문자산의 규모, 성격 및 자문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 기본수수료율 기준표]

구 분	수수료율 (부가세 포함)	납부시기 및 방법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재산 평균평가금액(평잔)의 연 1%	별도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름 (매월 후취)

* 산식 :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재산 평균평가금액(평잔) ×수수료율

3) 자문계약기간은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년간으로 하며, 투자자문 계약자산의 최소 가입금액 예치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계약 만료일의 익일부터 1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4) 계약기간 만기 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문자산을 증액 및 감액을 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합니다.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하여 기본수수료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② 투자자문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중도해지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수료 후취 납부 방식에 따라 수수료 반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문실적의 평가 및 통보

1) 계약 개시시점의 자산형태
회사와 고객이 투자자문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자산형태는 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상품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2)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개시일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① 계약개시일 또는 평가기준일에 현금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개시일 기준가격 또는 기타 공정가액으로 산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만기일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자문실적 보고 및 방법
투자자문실적의 보고는 고객이 지정하는 수단에 의해 사전에 협의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단,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기관 자문플랫폼 서비스, 기타의 유사한 방법으로 자문성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 통보할 내용
① 투자자문의 개요 및 포트폴리오 손익 현황
② 투자자문일자, 투자자문성과 등 전반적인 자문현황
③ 투자자문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부과시기, 금액 등)

9.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

1)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투자성향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투자자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투자성향의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문결과를 수시로 통보받아, 확인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고객은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청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INMOST ADVISOR

10.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경력)

회사의 임원 성명 및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공동 대표이사	장재창	前 신영증권 대치지점장 前 IFA파트너스(주) 대표이사 現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최근민	前 인모스트인베스트먼트 사외이사 現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감 사	김민철	前 LG전자(주) 現 (주)지엔텔

2)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장재창	21,000주	40.4(%)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최근민	13,000주	25(%)	대표이사 및 대주주
인모스트인베스트먼트	13,000주	25(%)	대주주
전창호	5,000주	9.6(%)	

* 별첨 : 투자자문사 소개

INMOST
ADVISOR

회사명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비 독립투자자문업자		
<주요공시사항>					
자문서비스 제공범위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환매조건부매매(RP) 등				
겸영업무	해당사항 없음				
계열금융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휴 금융기관	NH투자증권(주), 펀드온라인코리아(주), 삼성증권(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전화번호	02-2068-6482	팩스	02-2068-6481	E-mail	advisory1@inmostadvisor.com

※ 투자자문과 관련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수 • 수수료 등 수취 여부 :

본 자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주), 펀드 온라인코리아(주), 삼성증권(주), 키움증권(주), KB증권(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NH투자증권(주) :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발생한 매매수수료, 금융상품 판매 등 수익 중 70%

◯ 펀드온라인 코리아(주) : 자문결합계좌에서 발생한 펀드판매보수의 50%

◯ 삼성증권(주) : 자문사가 고객에게 자문을 제안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70%

◯ 키움증권(주) : 자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상품 판매 등 수익 중 70%

◯ KB증권(주) : 자문결합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수익 중 70%

투자자문계약서

(자문플랫폼용)

주식회사인모스트투자자문

투자자문계약서 (자문플랫폼용)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인모스트투자자문 (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문결합계좌"란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기관의 고객계좌를 말한다.
2. "자문플랫폼 서비스"란 고객 및 회사에게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계약 체결,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 자문내역관리, 고객관리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3. "업무수탁회사"란 자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문의 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집합투자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환매조건부 매매(RP)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5.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제 4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제 5 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으로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6 조 (투자자문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방식(전용어플리케이션 등), 유선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 7 조 (투자자문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의 평균평가금액(평잔)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자문결합계좌로부터 회사가 자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산정, 수취한다.
3. 투자자문결과에 따른 별도의 성과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① 고객은 업무수탁회사의 자문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자문담당자 확인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의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 내용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통지의무)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유선,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2 조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자문플랫폼 서비스,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MOST
ADVISOR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자문플랫폼 서비스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1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회사) 상 호 : (주)인모스트투자자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8층(신사동,ICTTower)
대 표 이 사 : 장 재 창, 최 근 민

<별 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원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 정률-월별, 투자자문재산 평균평가금액(평잔)의 연 1.0% (부가세포함)
☐ 성과수수료 : 없음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 지급시기 : 매월 단위 후취 (연 12회)
☐ 수수료 입금계좌 : 자문결합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의 회사 지정계좌

5. 투자자문담당자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주요 자격사항
장 재 창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PB학 석사 前 신영증권(주) 대치지점장 前 IFA파트너스(주) 대표이사 現 (주)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이사	펀드투자자문인력 증권투자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자문인력

6. 거래증권회사 계좌 : 삼성증권(주)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8.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없음.